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「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(PET)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중간재심사 개시」(기획재정부공고 제2025-98호, 2025.04.09. 공고)에 따라 해당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를 재심사한 결과, 해당 물품의 덤핑수입과 이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해당 물품에 대해 향후 부과될 덤핑방지관세율을 조정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산업통상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1) 입법예고(2026. 1. 26. ~ 2. 0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2) 행정규제 :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중국 및 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(PET) 필름에
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

중국 및 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(PET) 필름에 대한 덤핑방
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[별표2](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)를 별지와 같이 개정
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2]

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(제3조 관련)

공급국	공급자	덤핑방지 관세율 (%)
중국	1. 천진완화(Tianjin Wanhua Co., Ltd.)와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	36.98

	2. 캥훼이(Kanghui New Material Technology Co., Ltd.), 캥훼이무역(Kanghui International Trade(Jiangsu) Co., Ltd.)과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	7.31
	3. 푸웨이(Fuwei Films Shandong Co., Ltd.)와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	36.98
	4. 산토우(Shantou Soe First Polyester Films Co., Ltd.)와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	36.98
	5. 이화도레이(Yihua Toray Polyester Film Co., Ltd.)와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	36.98
	6. 장수중다(Jiangsu Zhongda New Materials International Co., Ltd.)와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	36.98
	7. 저장우밍(Zhejiang Wuming Trading Co., Ltd.)과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	36.98
	8. 티에스에프(TSF Co., Ltd.)와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	36.98
	9. 상하이(Shanghai Hansen Global Supply Co., Ltd.)와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	36.98
	10. 그 밖의 공급자	36.98
인도	11. 가웨어(Garware Polyester Limited)와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	34.90
	12. 진달(Jindal Poly Films Limited)과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	34.90
	13. 그 밖의 공급자	34.90

비고: 제 10 호의 공급자가 제 1 호 또는 제 2 호의 공급자와 「관세법 시행령」 제 23 조제 1 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제 10 호의 덤핑방지관세율에도 불구하고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제 1 호 또는 제 2 호의 공급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율을 적용한다.